

#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

(오현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오현정 · 문장길 · 이광성 · 송정빈 · 송아량 · 정진술 · 노식래 · 김호평 · 한기영 · 김소영 · 김화숙 · 조상호 · 김동식 · 김경영 · 김소양 · 봉양순 · 이영실 · 이병도 · 김용연 · 이정인 · 김혜련 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그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다른 조치 방법이 없어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상황임.
- 이에 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중독사고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독관리센터를 통한 중독사고시 응급의료정보의 제공, 각종 독성물질에 대한 조사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안하였음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2조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.
- 나. 제4조 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.
- 다. 제5조 제정안 제4조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 규정을 마련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1.“중독”이라 함은 자연적·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, 경구 섭취,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.

2.“독성물질”이라 함은 흡입, 경구,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.

② 이 외에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환경보건법」을 따른다.

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독성물질의 유해성·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독성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 (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)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을 위한 중독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
2. 시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응급의료정보의제공
3.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
4.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, 중독 사고,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
5.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
6.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 사고에 대한 조사
7.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와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
8.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 (센터의 운영)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.

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단,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

2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

3.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

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 (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(지도 및 감독)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제4조(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), 제5조(센터의 운영)에 따른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, 제6조(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)따른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 발생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-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
-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

#### 나. 전제

-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,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

#### 다. 추계기간 : 5년

#### 라. 방법

- 서울시에 유사기능을 가진 센터는 없으나, 운영형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담당실국에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센터 예산 준용하여 운영비 지원단가 산출

※ 2020년 서울시 예산서(中 민간위탁금)를 참고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,401,366천원/ 자살 예방센터 2,209,195천원/ 광역치매지원센터 941,331천원/ 식생활종합지원센터 760,000천원/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390,000천원의 중간규모인 광역치매지원센터 예산 준용

- 운영자문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9명이며 연6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위원회 운영비용 산출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≙ 4,756,155천원(연평균 951,231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		(2021년)	(2022년)	(2023년)	(2024년)	(2025년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(안 제4, 5조)	941,331	941,331	941,331	941,331	941,331	4,706,655
	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 (안 제6조)	9,900	9,900	9,900	9,900	9,900	49,500
	소계(b)	951,231	951,231	951,231	951,231	951,231	4,756,155
□총 비용(b-a)		951,231	951,231	951,231	951,231	951,231	4,756,155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   여차민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

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
-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

### 2. 세부추계내역

-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≍ 4,706,655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) 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
- 연간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

= 지원개소수 × 지원단가

= 1개소 × 941,331,000원

= 941,331천원

-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비용 ≍ 49,5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운영자문위원회 운영비용) 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
- 연간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비용

= (참석수당 × 수당지급 참석인원 × 개최건수) + (업무추진경비 × 참석인원 × 개최건수)

= (150,000원 × 9명 × 6회) + (30,000원 × 10명 × 6회)

= 9,900천원